##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65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이훈기・이정문・민병덕

문진석 • 이해식 • 이성윤

김용만 • 정을호 • 박민규

김교흥 · 정일영 · 노종면

허종식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주민자치회)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 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 ④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둔다.
  - 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주민자치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⑦ 주민자치회는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8 주민자치회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협의체, 시·도별 협의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별 협의체 및 시·도별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국 단위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주민자치회) 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위탁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위탁할 수 있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위탁한사항

- ④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을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는 수의위원을 둔다.
- 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 직으로 하고, 회원 중에서 호선 한다.
- ⑥ 주민자치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주민자치회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시·군·구별 협의체,시·도별협의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이경우 시·군·구별협의체 및시·도별협의체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국 단위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레로 정한다.